

의안번호	제2909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9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산불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산불 발생 원인 중 화목보일러 등에 따른 주택화재 비율이 전체 산불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화재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홍보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858(2025. 1. 24.)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56호

가) 예고기간: 2025. 1.20.~2025. 2.1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소화기 배부

다. 소요예산: 6,400천 원(연간)

- (소화기 구입비) 400가구 x 1세트 x 16,000원

※ 연간 세입예산: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에 따른 소화기 배부 비용은 연간 6,400천 원으로 예상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